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6. 19(금) 10:00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0년 5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내역

(단위: 원)

부서명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 출 사 유
계		127,000,000	114,061,040	12,938,96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20,000,000	19,181,040	818,960	어린이집 보육실 전체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를 위한 긴급 예산확보 필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107,000,000	94,880,000	12,120,000	태풍 등으로 인한 구립어린이집 시설 긴급 보수보강

나. 검토의견

- 2019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여성가족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2건에 총 1억 1,406만 1천원을 지출하였음.

지출 사유는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진 및 시설 긴급 보수 보강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법령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129조(예비비)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9호, 2020. 1. 29., 일부개정]

-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 [전문개정 2011. 8. 4.]